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45호 2011. 8 30(화)

◀ 훈 령 ▶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41호) 2

◀ 입법예고 ▶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816호) 6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1-817호) ... 14

◀ 공 고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1-809호)..... 27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8

회 람								
--------	--	--	--	--	--	--	--	--

훈 령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8월 30일

포항시 훈령 제 241호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행정감사규칙」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포항시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면책”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p> <p>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 및 「행정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 ----- ----- ----- ----- ----- ----- -----</p> <p>3.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p> <p>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면책대상 제외) (생 략)</p> <p>1. ~ 4. (생 략)</p> <p>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p>	<p>제6조(면책대상 제외)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③ (생 략)</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u>당해</u>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p>	<p>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2항과 제3항에 따른</u> ----- ----- -----<u>해당</u>----- ----- ----- -----</p>
<p>제16조(처분사유) (생 략)</p> <p>1. ~ 7. (생 략)</p> <p>8. <u>기타</u>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p>	<p>제16조(처분사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 ----- -----</p>
<p>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당해</u>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처분권자) ----- ----- ----- -----<u>해당</u>----- ----- -----</p>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 816 호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30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추가(안 제3조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0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09.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133, FAX 270-3090, E-mail : smmiya@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기금” 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9인” 을 “9명” 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 을 “기금업무담당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여기간” 을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 을 “기금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를 “회계연도” 로 한다.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3.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p> <p>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3.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u>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u></p> <p>3. ~ 4.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u></p> <p>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u></p> <p>3. <u>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u></p> <p>4.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p> <p>5. <u>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p> <p>6. <u>기금의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u></p> <p>7. <u>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1. (현행과 같음)</p> <p>2. 「<u>식품위생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37조에 따라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u></p> <p>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u></p> <p>3. <u>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u></p> <p>4. <u>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u></p> <p>5.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p> <p>6. <u>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u></p> <p>7. <u>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u></p>

현행	개정안
<p>〈신설〉 〈신설〉</p> <p>②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1. (생략)</p> <p>2. <u>복지환경국장</u></p> <p>3. ~ 4. (생략)</p> <p>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생략)</p> <p>1.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2. (생략)</p>	<p>8. <u>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u></p> <p>9. <u>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9명-----</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금업무담당국장</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남은 기간-----</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u>제4조에 따른</u> ----- ----- -----</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p>	<p>3. 그 밖의 ----- -----</p>
<p>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u>환경위생과</u>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생략)</p>	<p>제9조(간사 및 수당) ① ----- -----1명 ----- ② ----- <u>기금업무담당과장</u>----- ----- -----</p>
<p>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p>	<p>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 <u>회계연도</u>----- ----- ----- -----</p>
<p>제12조(회계공무원) (생략) 1. <u>기금운용관</u> : 복지환경국장 2. <u>기금분임운용관</u> : 업무담당 부서장 3. <u>기금출납원</u> : 위생관리담당</p>	<p>제12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u>기금운용관</u> : 기금업무담당국장 2. <u>기금분임운용관</u> : 기금업무담당과장 3. <u>기금출납원</u> : 기금업무담당</p>

포항시 공고 제2011- 817호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용자사업의 대상 및 제외대상, 상환조건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개선용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용자대상 및 용자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6조)
- 시설개선자금 부당 사용 등 상환기간 전 용자금액 전액 상환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09.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133, FAX 270-3090, E-mail : smmiya@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조례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로 하며, “1%” 를 “1퍼센트”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자대상자) ① 용자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용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용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

③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용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용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용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용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

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
-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6.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포항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p>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② ~ ③ (생략)</p>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 -----1퍼센트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생략)</p>	<p>제4조(위원의 해촉) ----- ----- -----해당----- ----- 1. ----- -----그 밖에----- ----- 2. (현행과 같음)</p>
<p>제6조(용자대상자) 용자 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p>	<p>제6조(용자대상자) ① 용자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위생관</p>

현행	개정안
<p>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 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이상(과징금 포 함)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자신청 대 상에서 제외 한다.</p>	<p>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 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 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 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 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의 행정 처분이 종료된 날부 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 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용자받 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조 레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용자금액 을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 내, 식품접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 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3%로 하 며, 화장실 개선용자금은 업소당 1 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용자를 받은 업소가 용 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용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 라도 수탁금융 기관에 즉시 통보하 고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기타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p>	<p>제8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시 설개선자금 용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 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 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과 중복신청 가능함) <p>②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 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p> <p>③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용자금액 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 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 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용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용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현행	개정안
	<p>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p> <p>3. <u>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용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 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u></p> <p>4. <u>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u></p> <p>5. <u>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u></p> <p>6. <u>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⑤ <u>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후 2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⑥ <u>그 밖에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업소명	업종
	주소	

용자신청 금 액	일금	원
-------------	----	---

용도	
----	--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업소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구체적인 사업계획

담당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용자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재산상태	총액	부동산	동산	동산의 주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제상태	월평균 소득	생활 상태	자부담가능액	기타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사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심사결과	결과	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
	사유			
	위원서명	위 원 명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성명		업소명	
주소			
용자금액		업종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용자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제 호			
성명		업소명	
주소			
용자금액		업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융자일	
	융자기간	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운영실태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 - 809 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8. 26.

1. 공 고 기 간 : 2011. 8. 29. ~ 2011. 9. 17. (20일간)
2. 폐 차 장 소 : 신진·포항·홍해·대원종합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2011. 9. 19.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울산32두1960호 외 6대

2011년 8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0.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8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악성	학아 (수자원공사) 신원기계업부	
			안개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개염수		진전지	눌테지수	곡감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17	불검출	불검출	0.18	0.16	불검출	불검출	0.20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1.6	1.1	1.6	1.8	1.4	0.6	1.4	2.2	1.5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5	0.02	0.03	0.05	0.06	0.01	0.04	0.06	0.03	
	건강상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돗물잔류염소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50	0.42	0.72	0.27	0.36	0.26	1.00	0.42	0.89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8	0.057	0.069	0.066	0.058	0.046	0.073	0.044	0.065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2	0.047	0.054	0.036	0.029	0.036	0.044	0.029	0.054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8	0.010	0.013	0.022	0.020	0.010	0.021	0.011	0.010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8	불검출	0.002	0.008	0.009	불검출	0.008	0.004	0.003	

구 분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광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용기계 일부	
			인계점수			인하점수	형산강 복류수 인계점수		전전지	늘대지수		곡강전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심 미 적 영 향 물 질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0	49	56	109	118	30	84	98	58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2	4.7	4.4	2.3	1.9	2.8	2.2	3.1	4.9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0	6.6	6.6	7.0	7.0	6.2	6.7	6.5	7.5	
	45.아연(Zn)	3mg/ℓ이하	0.010	0.002	불검출	0.002	0.008	0.014	0.006	0.315	0.005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6	10	14	29	28	11	25	16	15	
	47.총발전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31	106	132	254	254	118	196	149	133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0.012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12	0.13	0.14	0.05	0.07	0.07	0.13	0.12	0.08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50	14	21	56	59	10	42	59	21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0.02	불검출	0.03	0.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수장 급수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윤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진류영소	4.0mg/ℓ이하	0.27	0.52	0.73	0.19	0.27	0.24	0.96	0.41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5	0.005	불검출	0.022	0.039	0.014	0.006	0.318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27	10	14	27	29	11	26	17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